

국가소유 개발성과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서약서

1. 기술유출 방지대책

- 가.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(도면 포함), 파일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직원을 업무 관련자에 한해 사전에 지정하고 이외의 직원은 일체 취급 및 열람을 금지하겠음.
- 나.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과 관련한 자료를 전산장비 및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이용하는 경우, 해킹에 의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가 설정된 PC에 저장을 금지하고, USB·외장형 HDD 등은 반드시 등록된 매체를 사용하며 잠금장치가 된 케비넷에 보관하겠음.
- 다.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과 관련한 자료는 잠금장치가 된 케비넷 등에 보관하고 파기 시 반드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세절하겠음.
- 라.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에서 제외되거나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기술유출방지 서약서를 집행하겠음.

2. 국가소유 개발성과물 활용에 관한 준수사항

- 가. 방위사업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연구 결과 등 제반 권리를 대내·외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, 양도 또는 재실시를 허락할 수 없음.
- 나. 이전받은 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, 국가소유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특허권, 또는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.
- 다. 준수사항 위반 시 이전기술의 회수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「국방과학 기술료 산정·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(방위사업청 고시) 제4조(기술료) 또는 제4조의2(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료)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방위사업청에 납부하여야 하며, 이때, 기술료 감면에 관한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함.
- 라. 그 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6조 제2항의 기술이전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

(주) 000는 위와 같은 개발성과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XX. X. X

신청기술명 :

업 체 명 :

(주 소)

대 표 자 :

(서명 또는 인)